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 흠 제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성흠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안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  
명 드려야 하나 서면으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  
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  
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 관련 정보가 유통되고 마약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학생들이 마약에 노출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학생들을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보건교육에 마약류의 오용·남용의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상위법령인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보건교육에 ‘마약류의 오용·남용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을 2019.12.10.에 공포하여 2020.6.11.부터 시행하고 있어 「학교보건법」에서 수정된 ‘보건교육’ 정의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